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44
----------	-------

발의연월일 : 2026. 2. 25.

발 의 자 : 이준석 · 천하람 · 이주영
임종득 · 최형두 · 권영진
박성민 · 최은석 · 박대출
박준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통신판매중개가 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통신 판매중개의뢰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을 사용하고 작성한 사용후기가 통신 판매중개의뢰자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위하여 소비자의 이용후기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 경쟁업체의 허위사실에 기반한 후기 또는 악의적인 비방 등으로 인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매출 감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의뢰자와 소비자 간의 통신판매 중개에 관한 내용 및 소비자의 사용후기정보를 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의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사용후기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보하고 통신판매의뢰자를 보호

하고자 함(안 제20조의6 신설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31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6(중개에 관한 기록 및 사용후기정보의 보존 등) ①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통신판매의뢰자와 소비자 간의 통신판매 알선 내용 등 통신판매중개에 관한 기록 및 소비자가 재화등을 사용하고 작성한 사용후기정보를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사이버몰에 소비자가 작성한 사용후기정보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③ 매출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후기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사업자인 통신판매의뢰자의 신청에 따른 사용후기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21조의4제1항”을 “제20조의6제3항, 제21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45조제4항에 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4. 제2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에 관한 기록 또는
사용후기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312호 전자상거래 등에 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u><신 설></u>	법률 제21312호 전자상거래 등에 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u>제20조의6(중개에 관한 기록 및 사용후기정보의 보존 등) ①</u> <u>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 의뢰자와 소비자 간의 통신판 매 알선 내용 등 통신판매중개 에 관한 기록 및 소비자가 재 화등을 사용하고 작성한 사용 후기정보를 상당한 기간 보존 하여야 한다.</u> <u>②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사이버 몰에 소비자가 작성한 사용후 기정보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u> <u>③ 매출액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제2항 에 따라 사용후기정보를 공개 하는 경우 사업자인 통신판매 의뢰자의 신청에 따른 사용후 기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업</u>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제6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21조의4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

-----.

1.

--제20조의6제3항, 제21조의4
제1항--

